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51호)

1. 심사경과

가. 2003. 12. 13 : 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

나. 2003. 12. 13 : 운영위원회 회부

다. 2003. 12. 19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, 명칭변경, 기능 통합과 이관 등 업무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(안 제23조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총무위원회	**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**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 종합사회복지관, **위생환경사업소**	**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**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 종합사회복지관, **환경시설사업소, 문화예술회관**
산업건설 위 원 회	**해양수산담당관**, 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기술센타	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기술센타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정한용)

○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, 명칭변경, 기능통합 및 이관 등 업무조정에 따라 현행골격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